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13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표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802,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는 D의 차용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D과 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20. 2.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위 법원 2017가소213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3.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6. 18. C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D과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그 채권양도사실을 D과 E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소송신탁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C로부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D과 E는 2015. 3. 28.부터 2018. 4. 25.까지 ‘F’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7. 8. 10.부터 2018. 4. 4.까지 위 ‘F’에서 발생한 ‘G’로부터의 수익금 54,802,042원을 자녀인 피고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54,802,0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은 제3자인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21. 6. 18. C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그 이전인 2017. 8. 10.부터 2018. 4. 4.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피고가 행위 당시 채권자인 원고의 존재 등을 인식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원고 주장 자체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채권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D, E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과 E에 대한 면책사건(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하면235, 2017하면234)에서 “D과 E는 2015. 3. 28.부터 2018. 4. 25. 차남인 피고 명의를 빌려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면책불허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 D은 위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에 “피고는 형인 H로부터 초기 자금을 빌려 2015. 3. 26.경 I으로부터 ‘F’을 임차하여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F’에 관한 수입·지출은 모두 자신의 우리은행 금융계좌로 입출금하였다. 그러므로 D이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자녀로서 부모인 D, E에게 금융계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② 위 면책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은 “피고는 2016. 10. 27. 서울 광진구에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D, E)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F’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점, ④ 위 면책불허가 결정은 D과 E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⑤ 위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은 D이 작성한 것이고 그 기재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D, E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다현